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4*

제출년월일 : '95. 4.

제 출 자: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지방세법이 개정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한바 있으나 적용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천재 등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시 감면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로 감면하도록 함 (안 제4조)
- 나. 「납기한 연장」을 「기한의 연장」으로 개정하여 지방세의 모든 신고・납부・통지・제출등의 기한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안 제7조)
- 다. 지방세 감면신청은 지방세법 제292조 및 동법시행령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정비함 (안 제17조등)
- 라. 지하수의 정의가 지방세법시행령 제216조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함 (안 제77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나. 관계법령 : 생략

다. 합 의: '95. 2. 13,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준칙 시달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제9조 및 제9조의2"를 "제9조"로 한다.

제6조중 "구청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납기한 연장"을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기한"으로, "납기전"을 "기한이 만료되기 전"으로 하며, 동조 제2항중 "납기한"을 "기한"으로 하고, "납기한의 익일부터"를 "기한이 만료된 날의 익일부터"로,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연장할수 있다"로 하며, 동조 제3항중 "납기한"을 "기한"으로 하고, "납기한의 연장"을 "연장된"으로, "납기한을"를 "다시"로 하는, 동조제5항중 "납기한"을 "신고납부기한"으로 하고, "가산금은"은 "가산세는"으로. "징수한다"를 "적용한다"로 한다.

제17조의 제목중 "비과세 및 감면"을 "비과세"로 하고, 동조 중 "법 제 107조 내지 제110조와 법 제261조 내지 제291조"를 "법 제107조 내지

제110조"로 하며, "비과세 또는 감면"을 "비과세"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4조의 제목중 "비과세 및 감면"을 "비과세"로 하고, 동조중 "법 제261조 내지 제291조"를 "법 제127조 내지 128조"로 하며, "비과 세 또는 감면을"를 "비과세를"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4조중 "제32조"를 "제31조"로 한다.

제55조의 제목중 "비과세 및 감면"을 "비과세"로 하고, 동조중 "법 제 238조의2, 법 제279조, 법 제290조 제1항"을 "법 제238조의2"로 하며," 비과세 또는 감면"을 "비과세"로 한다.

제65조의 제목중 "비과세 및 감면"을 "비과세"로하고, 동조중 "비 과세 또는 감면"을 "비과세"로 한다.

제74조의 제목중 "비과세, 감면"을 "비과세"로 하고, 동조중 "비 과세 또는 감면"을 "비과세"로 한다.

제77조를 삭제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u>9조</u>
제6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시장은 시세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담배소비세의 경우는 시장이 직접 부과 징수한다.	
제7조 (납기한의 연장) ①납세의 작 또는 특별장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칙 이라 신청서를 납기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안
		9		
②구청장이 제1형	}의 규정에 의	②		
하여 납기한의 인	변장이 필요하다	기한		
고 인정하는 때여				
및 특별징수의무	자에 대하여 납			기한이
기한의 익일부터	3개월이내의	만료된 날	의 익일부터	
기간을 정하여 _	1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연장할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이	에 의하여 납기	3		기한
한의 연장을 받은	· 자가 불가피			
한 사유로 인하여	여 또다시 납기			기한
한의 연장을 받고	2자 할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E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의 연장 기	기한내에 관할	연장된		
구청장에게 신청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그 연정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납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시		
④ (생략)		④ (현행과	· 같음)	
⑤납기한의 연장	이 결정되었을	⑤신고납-		
경우의 당해 가신	난금은 그 연장		· 가산세·	는
기간이 만료된 대	대부터 징수한다	1 "		_ 적용한다.
제17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제17조 (비괴	세 적용자의	니 신고사항)
신고사항) 법 저	107조 내지 제	법 제107	 조 내지 제1	10조
				* .

현	행	개	정	안
110조와 법	제261조 내지 제29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비과세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			
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	~		
추어 당해 3	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	청장에게 제출하여			******
야 한다.				
1~4. (생략)	var	1~4. (현학	행과 같음)	
제21조 (광산용	· 임목취득의 면세신	〈삭제〉		
청) 법 제1()8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신	용에 사용하기 위한		-	
임목을 취득	한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자	l한 신청서에 광업권			
설정자 또는	· 광산경영자임을			~
증명하는 서	l류와 취득에 관한			
계약서 및	벌채허가등 관계서류		Ŷ.	
를 첨부하여	·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자의	주소 · 거소 · 성명			
또는 명칭]			
2. 취득물건	의 소재지		*	e
3. 취득년월	일·벌채허가년월 및		ē.	
벌채기간	,	,		
4. 수종·수	- 령 · 주수 · 축적량 (재			*
적)				
5. 기타 참고	고사항			9

현	행	7위	정	안
제24조(비과세 1	및 감면적용자의	제24조 (비)	각세	
	<u>제261</u> 조 내지 제			내지 제128조
	에 의하여 등록세			
를 비과세 또·	는 감면을 받고자	비과세를		
하는 자는 다	음 각호에 게기하			
는 사항을 중	명할 수 있는 서류			
를 갖추어 당	해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	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난다.			я
1~4. (생략)		1∼4. (ই	변행과 같음)	
제32조 (천재등의	그로 인한 감면신청	〈삭제〉		
	2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당	변받고자 하는 자는	-		
시행규칙 제8	3조제1항의 규정에	-		
의한 신고서	식에 의하여 그 농			*
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피해년월일,	피해사유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한 신청서를 피해사			
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감면결	정통지) 구청장은	제34조 (감	면결정통지)	
	제32조의 규정에		제31조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결정하고 그 결정니	al		
	칙 제 8 3조제2항의			
	통지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하다			

현	행	개	정	안
1~4. (생략)	1~4. (현학	행과 같음)		
제77조(정의) 이 관여	에서 사용하는	(삭제)		
용어의 정의는 다	음과 같다.		F _n	
1. "지하수"라 함은	 · 채수한 지하			
수를 음용수로	판매하는 것과			*
온천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채수한 온천수를	목욕용수로			is a second of the second of t
사용하는 것을 '	말한다.			
ገ "ዕ ዐ ሌ "።] አኒ ዕ	4) O O =			5 a
2. "음용수"라 함은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는 자연성				
말한다.	네의 물글			
204.			9	
		,		
	a ^a	'		
			e u	
,		ā		a a
			(a)	
		×	e ,	
				*
	,	,		
l .				

의 안 검 토 보 고

1. 발의 또는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2. 건 명: 대전광역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

3. 안건요지 : 별 첨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1995. 4.

내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995. 4.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1995. 4. 17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 4. 15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 안 이 유

지방세법이 개정(1994.12.22, 법률 제4794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한바 있으나 적용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 가. 천재 등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시 감면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로 감면토록 함. (안 제4조)
- 나. 「납기한 연장」을 「기한의 연장」으로 개정하여 지방세의 모든 신고, 납부, 통지, 제출등의 기한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안 제7조)
- 다. 지방세 감면신청은 지방세법 제292조 및 동법시행령 제23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정비 함. (안 제17조등)
- 라. 지하수의 정의가 지방세법시행령 제216조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함. (안 제77조)

3. 검 토 의 견

본 안건은 지난 94년 12월 22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선하였는바, 그 적용규정이 불명확하고 시행상 일부 미비점이 있어서, 이를 재보완하려는 내용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첫째, 안 제4조에서 천재등으로 인한 지방세감면은 지방세법 제9조의2의 규정에서 지방의회의 의결로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지방세법에서 별도 규정한 천재등의 감면내용을 본조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 둘째, 안 제7조에서는 "납기의 연장"을 "기한의 연장"으로 하여 지방 세의 모든 신고, 납부, 통지, 제출등의 기한연장이 가능토록 하였음.
- 셋째, 지방세의 감면신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29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1조에 의거 신청토록 별도 규정하고 있어서, 본 안중 감면 신청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 넷째, 안 제77조의 지하수등의 용어정의는 지방세법 제216조에서 별도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된 본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본 시세조례안은 지난 94년 12월 관련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금년 2월에 이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한바 있는데, 그 이후에 시행상 일부 미비점과 불명확한 사항이 있어서이를 재정비 보완한 것이라 하겠음.

따라서 금번 개정안은 관련법에 의한 범위 내에서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된 조례내용을 삭제 정비하려는 내용으로서 본안과 같이 개정 시행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